
2019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일 : 2020년 2월 28일

덕성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목 차

제1장 서론

1.1 자체평가 목적	1
1.2 자체평가 방법	2
1.3 자체평가 위원회	2
1.4 자체평가 대상 기간	2
1.5 자체평가 영역	3
1.6 자체평가 일정	4

제2장 특수대학원 현황

2.1 교육대학원 현황	5
2.1.1 제반 사항	5
2.1.2 전임교원 현황	5
2.1.3 학생 현황	6
2.2 문화·산업대학원 현황	7
2.2.1 제반 사항	7
2.2.2 전임교원 현황	7
2.2.3 학생 현황	8

제3장 자체평가 결과

3.1 발전계획 영역	9
3.1.1 발전계획	9
3.1.2 발전계획 추진 실적	10
3.2 교육여건 영역	11
3.2.1 교원	11
3.2.1.1 전임교원 강의 비율	11
3.2.1.2 시간강사 운영	12
3.2.2 행·재정	15

3.2.2.1 시설 및 강의실 현황	15
3.2.2.2 행정직원 확보율	16
3.2.2.3 재정운영의 적절성	16
3.3 교육과정 영역	19
3.3.1 교육과정 운영	19
3.3.1.1 교육과정 편성	19
3.3.1.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	21
3.3.2 수업	23
3.3.2.1 강좌 당 학생 수	23
3.3.2.2 강의만족도	32
3.4 성과 영역	35
3.4.1 신입생 충원율	35
3.4.2 중도탈락생 비율	36
3.4.3 석사학위 수여 현황	37
3.4.4 교원자격 수여 및 이수증 발급 현황	41

표 목 차

〈표 1-1-1〉 자체평가 관련 규정	1
〈표 1-3-1〉 자체평가위원회	2
〈표 1-5-1〉 자체평가 영역	3
〈표 1-6-1〉 자체평가 일정	4
〈표 2-1-1-1〉 제반 사항	5
〈표 2-1-2-1〉 전임교원 현황	5
〈표 2-1-3-1〉 학생 현황	6
〈표 2-2-1-1〉 제반 사항	7
〈표 2-2-2-1〉 전임교원 현황	7
〈표 2-2-3-1〉 학생 현황	8
〈표 3-1-1-1〉 발전계획	9
〈표 3-1-2-1〉 발전계획 추진 실적	10
〈표 3-2-1-1-1〉 전임교원 강의 비율	11
〈표 3-2-1-2-1〉 시간강사 관련 규정	12
〈표 3-2-1-2-2〉 최근 2개년 시간강사 강의료	14
〈표 3-2-2-1-1〉 강의실 현황	15
〈표 3-2-2-2-1〉 2019년 행정 직원 확보율	16
〈표 3-2-2-3-1〉 장학금 지급 규정	16
〈표 3-2-2-3-2〉 장학금 지급 내역	17
〈표 3-3-1-1-1〉 교육과정 관련 규정	19
〈표 3-3-1-1-2〉 개설 강좌 수	20
〈표 3-3-1-2-1〉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	21
〈표 3-3-1-2-2〉 연구 및 현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	22
〈표 3-3-2-1〉 학기 당 이수 학점 규정	23
〈표 3-3-2-1-1〉 강좌 당 학생 수	23
〈표 3-3-2-1-2〉 전공별, 강좌별 수강 학생 수	24
〈표 3-3-2-2-1〉 강의 평가 문항	32
〈표 3-3-2-2-2〉 강의 만족도(강의 평가) 조사	33

〈표 3-3-2-2-3〉 강의 평가 3.5이상 강좌 수	33
〈표 3-3-2-2-4〉 강의 평가에 따른 강좌 수 비교	34
〈표 3-3-2-2-5〉 시간강사 위촉 제한 관련 규정	34
〈표 3-3-2-2-6〉 강의평가 3.0 미만 강좌	34
〈표 3-4-1-1〉 입학 정원 규정	35
〈표 3-4-1-2〉 신입생 총원율	35
〈표 3-4-2-1〉 중도 탈락 관련 규정	36
〈표 3-4-2-2〉 중도 탈락 학생 비율	36
〈표 3-4-3-1〉 석사학위 수여 규정	37
〈표 3-4-3-2〉 석사학위 수여 현황	38
〈표 3-4-3-3〉 논문 제출 자격 시험 규정	39
〈표 3-4-3-4〉 외국어시험 현황	40
〈표 3-4-4-1〉 영양교사 2급 교원자격 수여 및 전문상담교사 1급을 위한 이수증 발급 현황	41

그림 목 차

[그림 1-2-1] 자체평가의 적용	2
[그림 3-2-2-1-1] 시설 현황	15

제1장 서론

1.1 자체평가 목적

- 우리 특수대학원의 자체평가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특수대학원의 현재를 자체적으로 심층 분석·평가하는 활동으로 특수대학원의 발전 계획과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스스로 진단·규명하고, 이를 대학원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대학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1-1-1〉 자체평가 관련 규정

<p>○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제 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 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p> <p>○ 대학원(통합)학칙 제10장제52조 제 52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원의 교육·연구·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년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장 신설 2015.12.22.]</p>

1.6 자체평가 일정

〈표 1-6-1〉 자체평가 일정

2019년 12월 20일	▷ 2019년 특수대학원 자체평가 시행 및 관련 예산 배정 신청
2020년 1월 6일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2020년 1월 7일 ~ 2020년 1월 30일	▷ 자체평가 관련 기초 자료 수집 및 기초자료 공유
2020년 1월 21일 ~ 2020년 1월 31일	▷ 특수대학원 만족도 조사 실시
2020년 2월 3일 ~ 2020년 2월 12일	▷ 세부 영역에 따른 지표별 미비 또는 보완 사항 검토
2020년 2월 14일	▷ 1차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완료
2020년 2월 19일	▷ 1차 자체평가 관련 회의
2020년 2월 21일 ~ 2020년 2월 25일	▷ 2차 자체평가 보고서 수정 및 보완
2020년 2월 26일	▷ 최종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완료 및 총장 보고
2020년 2월 28일	▷ 자체평가 보고서 공시